

축산업등록제, 어떻게 시행되나?

농림부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축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의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05.12.26일)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한육우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이 300m²이상(30두 규모)인 농가, 젖소는 100m²이상(10두규모), 돼지는 50m²이상(50두규모) 및 닭은 300m²이상(3천수규모)이고,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천호(4.3%), 젖소 11천호(94%), 돼지 10천호(59%), 닭 3.8천호(2%)로 모두 34천호가 된다.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축산업등록제 도입 배경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 축산물 안전성 확보,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의 각 국의 경우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대만은 19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19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는 추세에 있다.

2. 시행방안

이번에 발표된 시행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방역 등 질병관리의 철저를 위해서는 전 농가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행정수요 증가,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관리의 어려움,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효과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등록토록 하였다.

한육우 농가의 경우 자가 노동력·농가부산물 활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가능성이 낮고, 소규모농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2005년까지 300m²이상(30두 규모)농가를 등록하고, 2005년에 축산업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년까지 100m²이상(10두 규모)농가를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낙농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농가가 적고, 수입조사료 사용, 집유차운행 등으로 질병전파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용이하므로 2005년까지 100m²이상(10두 규모)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양돈농가는 전업농가의 사육두수비중이 높고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분뇨발생량도 많으므로 2005년까지 50m²이상(50두 규모)농가를 등록토록 하였다.

양계농가는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소규모 부업농가수가 많으면서 사육두수비중은 적은 점을 감안하여 300m²이상(3천두 규모) 농가를 2005년까지 등록토록 하였다.

둘째, 등록시 시설·장비기준은 등록제 도입취지를 살리되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소화하였다.

즉, 가축사육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 설치규정에 적합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분뇨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새로운 규제는 추가하지 않되, 기존 시행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화업·종축업은 성장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설치, 계란집하업은 원료란과 상품란 구분시설 등 축산업 종류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셋째, 축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하여 밀식사육에 의한 질병발생과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축산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종돈업의 경우 혈통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3. 축산업등록제 기대 효과

이와같이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가축질병 방역을 효율화 할 수 있다.

〈표 1〉 축종별 등록대상 농가규모(안)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록농가 규모	300m ² (30두)	100m ² (10두)	50m ² (50두)	300m ² (3천두)
농가수 (비율)	9천호 (4.3%)	11 (94)	10 (59)	3.6 (2)
사육두수비율	44 %	99	99	98

* 한육우는 2005년 시행령 개정, 2006년까지 100m²이상(10두규모) 농가 등록(20천호)

둘째,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등 청결 유지의무 부여,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하며 셋째, 등록농가 전산 D/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실시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넷째, 등록농가의 사육규모,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축산정책의 실시로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섯째, 등록시 관련법에 의한 소독시설 설치와 분뇨처리기준 등 시설·장비기준을 위반하거나, 등록후 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등 축산업 등록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이번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그간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이견을 조정하고 등록제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등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적정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 처리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정부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C

〈표 2〉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및 두수(2002.12)

구분		축종(%)				합계
		한우우	젖소	돼지	닭	
전농가	농가(천호)	212	12	17	176	417
	두수	1,410	544	8,974	101,693	
오분법상 허가규모 (특정지역)	면적(m ²)	450	450	500	(500)	
	사육규모(두,수)	45	45	500	5,000	
	농가(천호)	5 (2.3)	5 (46.2)	5 (29.1)	3.5 (2.0)	19
	두수	499 (35)	376 (76.3)	7,921 (90.1)	99,278 (97.6)	
예방법상 소독시설 설치기준	면적(m ²)	300	300	300	300	
	사육규모(두,수)	30	30	300	3,000	
	농가(천호)	9 (4.3)	8 (70.7)	6 (36.4)	4 (2.0)	37
	두수	619 (43.9)	482 (88.6)	8,421 (95.6)	99,798 (98.1)	
오분법상 신고규모 이상	면적(m ²)	100	100	50	150	
	사육규모(두,수)	10	10	50	1,500	
	농가(천호)	29 (14)	11 (93.5)	10 (58.6)	4 (2.2)	54
	두수	943 (66.1)	540 (99.3)	8,933 (99.5)	100,141 (98.5)	